

1. 개정이유

권역외상센터 및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다른 응급의료센터 지정과 동일하게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개정(‘20.4.7)사항을 행정처분의 기준에 반영하며, 같은 법 제47조의2(심폐소생술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개정(‘19.12.3)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 신고 서식에 구비의무기관을 추가하는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권역외상센터 지정 시 조건부 지정 추가(안 제17조의2)
- 나.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조건부 지정 추가(안 제17조의3)
- 다. 행정처분의 기준 중 “타”항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5항 추가(안 별표 18)
- 라.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구비의무기관 추가 등 신고양식 변경(안 별지 제15호의13~16)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0000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별표 18 제2호 개별기준의 타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6조의2 제3항”을 “법 제36조의2 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13부터 제15호의1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행정처분의 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2 이상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업무정지, 2 이상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증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증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4차 위반을 한 경우에 있어서 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취소 또는 영업허가취소를 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면허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취소를 하여야 한다.
- 마.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당해 처분권자가 의료정책추진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중 응급의료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3개월	면허 또는 자격취소
나.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8조를	법 제55조	면허 또는	면허 또는	면허 또는

위반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거부한 경우	제1항제1호	자격정지 7일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하어 특별한 사유없이 응급의료 지원센터의 장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경우				
1) 응급의료종사자	법 제55조 제1항제1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3개월	사.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아.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자.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3호 법 제55조 제3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2)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	법 제55조 제3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차. 법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이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다. 응급구조사가 법 제36조의2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법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파. 응급구조사가 법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4호 법 제55조 제3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라.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급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의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경우 1) 응급의료종사자	법 제55조 제1항제2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법 제55조 제1항제3호의2	자격취소		
2)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	법 제55조 제3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가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	법 제55조 제3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법 제55조 제1항제4호	자격취소		

하. 응급구조사가 법 제39조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약품의 관리·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호	자격정지 7일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어.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가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에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등과 통신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저.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장비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보관하지 아니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치.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가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 응급구조사 등을 탑승시키지 아니한 경우 커.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에 같은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다)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구급차등의 운용자나 응급환자의 진료의 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 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의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제1호	1개월	2개월	3개월
거. 응급구조사가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어.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가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에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등과 통신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저.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장비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보관하지 아니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치.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가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 응급구조사 등을 탑승시키지 아니한 경우 커.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에 같은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다)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구급차등의 운용자나 응급환자의 진료의 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 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의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너. 응급구조사가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5호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저.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장비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보관하지 아니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치.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가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 응급구조사 등을 탑승시키지 아니한 경우 커.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에 같은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다)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구급차등의 운용자나 응급환자의 진료의 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 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의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더. 응급구조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6호	시정명령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 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의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러.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1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머.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가 법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버.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가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구급차등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서.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가 법	법 제55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과. 급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허. 급급차등의 운용자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에 갈음한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다)가 제출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고. 급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5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노.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도.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로.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모. 이송업자가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의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보. 이송업자가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송업의 전부 또	법 제55조 제3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는 일부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소. 이송업자가 법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송업의 지위를 승계한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오. 구급차등의 운송자가 법 제54조의2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조.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의 운송자가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1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초. 의료기관(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이 법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경우	법 제55조 제3항제1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13 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설치기관	명칭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 제 조사 제품명(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설치위치 설치일자 장비 기판분류		
	장비별 기관분류		
	① 공공보건의료기관 ③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② 119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④ 공항 ⑤ 여객항공기 ⑥ 철도 차량 중 객차 ⑦ 총 톤 수 20톤 이상인 선박 ⑧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⑨ 철도역사의 대합실 ⑩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⑪ 「함안읍」 상 대합실 ⑫ 카지노 ⑬ 경마장 ⑭ 경주장 ⑮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외국인보호소·소년원 ⑯ 중앙행정기관 청사 ⑰ 운동장·종합운동장 ⑱ 시·도 청사		
응급정비	건강 ㉑ 의요기관(종합병원, 병의원) ㉒ 요양기관(요양원, 신평타운, 쉼터 등) 구비업무권 외 ㉓ 중앙행정기관청사 및 시도 청사 외의 지자체 청사 ㉔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㉕ 학교 ㉖ 경찰 ㉗ 군 ㉘ 기타() ㉙ 종교시설 ㉚ 공공시설(실외) ㉛ 기타() 교통시설 ㉜ 지하철역 ㉝ 버스정류장 ㉞ 택시승강장 ㉟ 기타() 그 밖의 기관 구급차 특수 구급차 ㊲ 일반 구급차 ㊳ 사무실 ㊴ 은행 ㊵ 소품물 ㊶ 주유소 ㊷ 식당 ㊸ 기타() 숙박,여가 ㊹ 숙박업 ㊺ 스포츠 레저산업 ㊻ 헬스장 ㊼ 수영장 ㊽ 공립 ㊾ 기타() 공동 주택 ㊿ 500세대 미만 그 밖의		
관리 책임자	성명	주 관리책임자	직위
			전화번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장비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illegible]

제출서류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차

```

    graph LR
      A[신고서 제출  
신고인] --> B[접수  
시·군·구  
(담당부서)]
      B --> C[검 토  
시·군·구  
(담당부서)]
      C --> D[결재  
시·군·구  
(담당부서)]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14 서식]

응급장비 등록대장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1. 설치 기관	기관명			개설자 성명				
	소재지							
2. 관리 책임자 현황		의사	간호사	응급 구조사	간호 조무사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수료자	기타	
	계							
	성명							
3. 응급장비의 설치 현황(총 설치 대수: 대)								
연 번	제 조 국	제 조 사	제 품 명 (모델명)	제 조 번 호	제 조 연 월 일	설 치 위 치	설 치 일 자	장비별 기관분류
※ 장비별 기관분류: 설치 신고서 내 장비별 기관분류 참조 첨부서류: 응급장비 설치·양도·폐기·이전 신고 시 제출된 서류								

210mm × 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응급장비 **[]양도** **신고서**
[]폐기
[]이전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설치기관

명칭
주소

전화번호

제2국

제2주소

제품명(모델명)

제2번호

제2연월일

설치위치

설치일자

장비기호문류

장비별 기관분류

구비의유기관

① 공공토건의료기관

② 119구급대에서 운용 중인구급차

③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구급차

④ 여객항공기

⑤ 철도 차량 중 객차

⑥ 철도차량(500세대 이상)

⑦ 철도역사의 대합실

⑧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⑨ 카지노

⑩ 카지노, 소년보호관찰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⑪ 환마법, 소 대합실

⑫ 고도차, 종합운동장

⑬ 도로차량

⑭ 시·도 청사

⑮ 중앙행정기관 청사

응급장비

건강

①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② 요양기관(요양원, 실험터원, 원터 등)

구급차(구급차)

③ 중앙행정기관청사 및 시도 청사 외의 지자체 청사

④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⑤ 공공시설

⑥ 경찰청

⑦ 공공시설(실외)

⑧ 기타()

교통시설

⑨ 지하철역

⑩ 버스정류장

⑪ 택시승강장

그 밖의 기관

구급차

① 특수 구급차

② 일반 구급차

상업시설

③ 사무실

④ 음식점

⑤ 은행

⑥ 소매점

()

숙박, 여가

⑦ 숙박업

⑧ 스포츠 레저산업

⑨ 헬스장

⑩ 기타()

공동주택

⑪ 주택

⑫ 공점

⑬ 기타

기타

신고내용

양도

양도 예정일

양수 예정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사유

폐기

폐기 예정일

사유

이전

이전 예정일

이전 예정 위치

사유

관리 책임자

성명

주관리책임자

직위

전화번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장비 설치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리 절차

신고서 제출

접수

검토

결재

신고인

시·군·구
(장청서)

시·군·구
(장청서)

시·군·구
(장청서)

210mm×297mm(택시장(80g/㎡) 또는 증정장(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연 락 처	(044) 202 - 2559